



제 974 호

2011년 4월 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2011- 10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2
조례 폐지 조례

공 고

- 공고 제2011- 434호 인천광역시남동구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 4
한 조례(안) 공고
- 공고 제2011- 435호 인천광역시남동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12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공고 제2011- 439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19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 제2011- 44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
예정공고
- 공고 제2011- 448호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 21
분 통보서·고지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 제2011- 453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공고 22
- 공고 제2011- 457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 23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 제2011- 458호 도림지구 체비지 매각관련 공고 24
- 공고 제2011- 461호 구유재산 매각 공고 29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3월 31일

남동구 조례 제10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 이유

-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4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노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노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03.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노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 분뇨 처리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시행됨에 따라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인천광역시남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

- 분노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분노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및 계약에 포함될 사항
- 분노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1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환경보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전화 : 032)453-2650, FAX : 032)453-2609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노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1. 03.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정사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 동 개정 법률에 부합되도록 「인천광역시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및 계약에 포함될 사항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 별 첨 ” 참조

□ 참고사항

- 하수도법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함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정한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란 인천광역시남동구 전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5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의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 보관 상태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59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체결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으로 본다.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용 량	요금(원)	비 고
수거식 화장실 (분뇨수거)		10리터당	200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기본요금	750리터당	14,662	
	추가요금	100리터당	1,135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43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03.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처리규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 동 제정 법률에 부합되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 지역 범위(안 제3조)
- 가축사육자의 의무(안 제4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환경보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전화 : 032)453-2650, FAX : 032)453-2609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 03.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정사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분법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 동 제정 법률에 부합되도록 「인천광역시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안 제3조)
- 가축사육자의 의무(안 제4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별첨” 참조

□ 참고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남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젓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가축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의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조류

② 구청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1. 축사의 이전
2.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금지
2. 인근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 및 가축사육시설 내외의 청결 유지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축산폐수관련)는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동명(법정동)	비 고
일 부 제 한 구 역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4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 제2항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고지 및 독촉 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압류 일자	위반 차량	압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체납액 (원)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김나현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629-1	2011. 02.28	57년1569	57년1569	홈플러스 구월점 지하층 (2010.10.30 15:10)	106,200	2011. 03.03	2011. 03.14	폐문 부재

3. 공고기간 : 2011. 03. 29~ 04. 13(15일간)

4. 유의사항

◦ 최초 과태료(금일십만원) 부과 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이후부터는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증가산금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3. 2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442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1. 04. 2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공 고 기 간 : 2011. 04. 01~ 2011. 04.20(2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교부 번호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만수5-26	꺼병이	김은경	만수동 946-21	사업자등록폐업(직권말소)	2010.10.31	2011.04.21
일반	만수1-425	대정	심근영	만수동 953-19	사업자등록폐업(직권말소)	2010.02.28	2011.04.21
일반	논고-229	화개장터	강수연	고잔동 632-3	사업자등록폐업(직권말소)	2004.01.31	2011.04.21
일반	간석2-85	마이씨푸드	박정민	간석동 195-2	사업자등록폐업(직권말소)	2011.03.17	2011.04.2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2011.04.20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2

2011. 03.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4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 남동구 간석동 남병모 외 1인
 ○ 공 고 기 간 : 2011. 3. 31. ~ 2011. 4. 18.(19일간)
 ○ 공 고 내 용 :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사고지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접수 일자	위 반 사 항				업체명 운전자	행정 처분	법적근거
	일시	장소	차량번호	신고내용			
2010. 12.13	10.12.08 14:36~ 14:54	송내 남부역	인천32바1137	장기정차여객 유치	남병모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2011. 01.04	11.01.03 14:32~ 14:36	송내 남부역	인천32바1148	복장위반	박진섭	경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1.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사고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미수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고지서 수령대상자께서는 납부기일 2011.04.18.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453-2912)로 오셔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농협 또는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453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배달결과 : 2011.3.25. 동기우편물 반송, 주소불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1. 4. 21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저당)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 04. 01. ~ 2011. 04. 21.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 명	사 용 본 거 지			
04주9606	김창래	인천. 남동. 간석동	1996.11.27. 자동차가압류 (사건번호 96카단38577)	이갑순	인천. 부평. 십정동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41)

2011. 04. 0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4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독촉및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옥심, 김성현	인천시 중구 신흥동1가	57년1742	사회복지회관 (2010.08.11 10:48)	2010.12.07	2010.12.17	폐문부재
강용복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모충동	52라6224	홈플러스 간식점 (2010.08.06 14:37)	2010.12.07	2010.12.13	이사불명
임병도	인천시 남구 주안동	08허8326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아파트 (2010.06.22 17:22)	2010.12.07	2010.12.13	수취인 불명

3. 공고(과태료납부) 기간 : 2011. 03. 31~ 04. 15(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독촉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 03. 3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458호

체비지매각 공개경쟁입찰 (수정)공고

(도립지구 체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3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도립지구 체비지 매각
- 입찰에 부치는 토지 표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예정가격(원)	비고
1	도립지구 체 비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658-8 (10B-8L)	대	403.3	946,028,540 (감정평가수수료포함)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 층수등은 사전문의 요망
2	도립지구 체 비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666-6 (19B-4L)	대	130.3	147,598,860 (감정평가수수료포함)	

- 공고기간 : 2011.3.31 ~ 2011.4.14
- 입찰기간 : 2011.4.15(금) ~ 2011.4.21(목) 16:00
- 개찰일시 : 2011.4.22(금) 10:00 도시관리과 담당자PC
- 계약기간 : 개찰일부터 10일내
- 입찰서 제출 : 온비드(www.onbid.co.kr)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인터넷 입찰방법 및 온비드 이용안내(동영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1회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자동선택기능)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 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체결 전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개된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남동구청⇔낙찰자)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지정기일내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서 발부한 대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보며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중도금 100분의 40이상 30일내, 잔금은 60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약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연12%)를 징수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 매각재산에 대한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필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필지로서 매매대금 완납시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및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현 지구단위 계획상 필지내 단독개발만 가능하며, 합병등 공동개발시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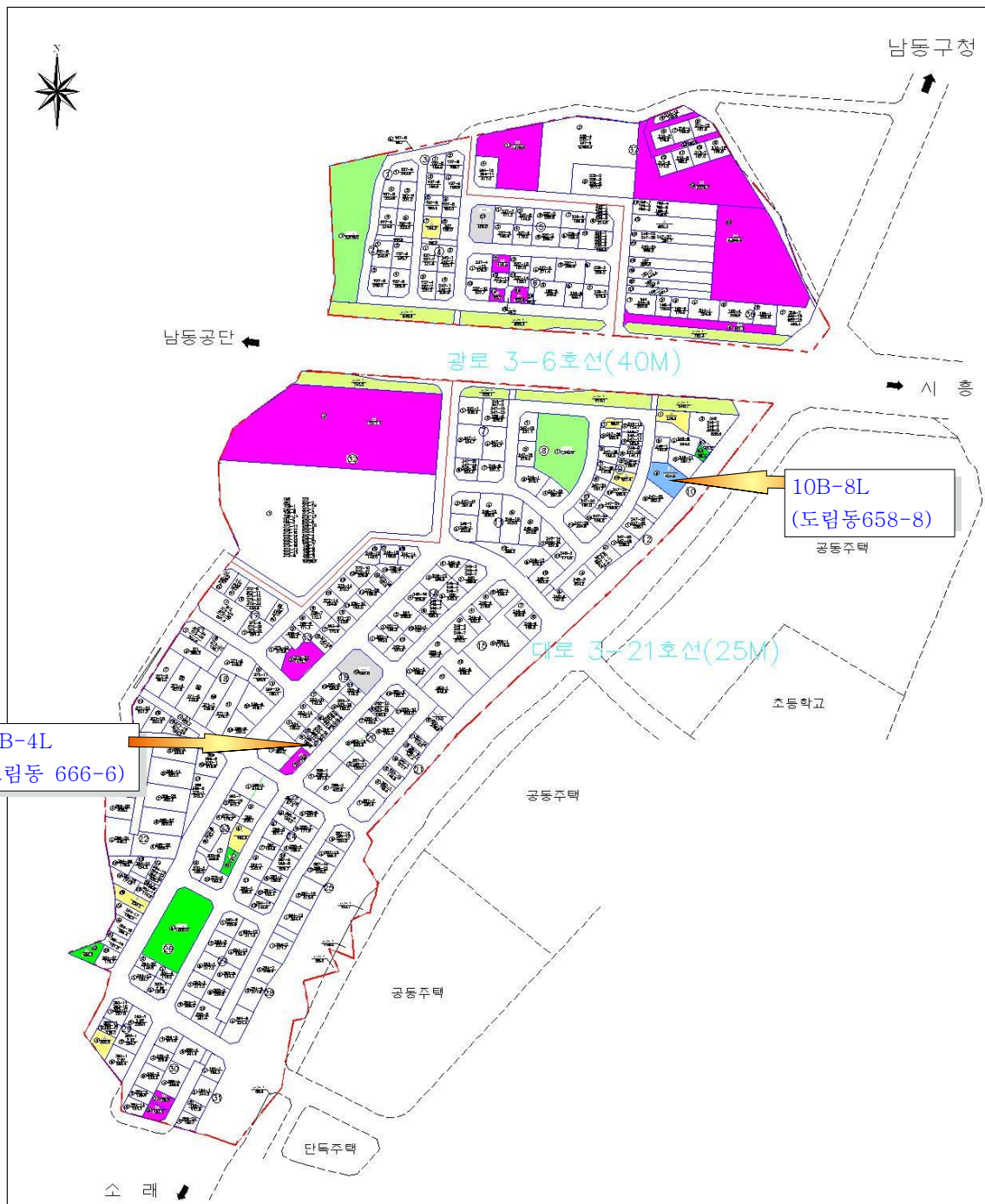
9. 입찰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매각공고문, 지구단위계획 등) 및 매각토지상의 지장물, 토지활용제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재산의 현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3)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1588-5321)

체비지 현황도(도림동)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461호

구 유 재 산 매 각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에 부치는 재산표시

순번	토지소재지	토지현황		예정가격(원)	비 고
		지목	면적(m ²)		
1	남동구 만수동 1120-2(유치원)	대	580.9	1,653,346,400	

○ 공고기간 : 2011. 4. 1. ~ 2011. 4. 14.

○ 입찰기간 : 2011. 4. 15.(10:00) ~ 2011. 4. 19.(16:00)

○ 개찰일시 : 2011. 4. 20. (14:00 도시관리과 담당자PC)

○ 계약기간 : 개찰일부터 15일내

2. 입찰참여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단독 또는 공동)로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의 제출은 입찰기간내에 온비드(www.onbid.co.kr)에 제출하여야 하며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인터넷 입찰방법 및 온비드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

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 공동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포함)를 우리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1회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자동선택기능)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체결 전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계약대금납부 등 계약서를 포함한 계약내용의 이행은 공동입찰참가자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은 우리구에서 발부한 대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봅니다.
-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시 매 6개월마다 2년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잔액에 대하여 분납이자(년6%)를 부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12% ~ 15%)를 징수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약정일부터 18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지분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토지는 유치원용지로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며 미통과시 계약자는 우리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자가 납부한 매매대금에 한하여 실제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후 별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 매각재산에 대한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필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필지로서 매매대금 완납시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공동입찰자 포함)는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지장물, 지구단위계획(토지활용계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재산의 현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4)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1588-5321)

2011. 4. 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